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처벌규정 신설〉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31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술자료 유용행위 처벌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신설 등)	2
※ 참고자료	5
1. 수탁·위탁거래(30가지)와 하도급거래(7가지) 비교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6.
3. 회부연월일 : 2026. 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형사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게 제공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위탁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의 2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기술자료 유용행위 처벌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41조</u>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제41조의2(벌칙)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42조(양벌규정) ----- ----- ----- -----<u>제41조 및 제41조의2</u>----- ----- ----- ----- ----- ----- -----.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유용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 등도 함께 처벌하는 양

벌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점 부과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과징금 부과 및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지는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행정적, 민사적 제재수단 외에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위탁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경우 최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¹⁾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는 개정안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는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입법 실익이 없고 중복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유형(30가지)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유형(7가지)을 모두 포함하여 오히려 그 범위가 더 넓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거래유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63

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1	수탁·위탁거래(30가지)와 하도급거래(7가지) 비교																						
구분	상생협력법 (위탁기업-수탁기업)	하도급법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정의	■ (위탁기업) 제조, 판매, 수리, 공사, 가공,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 (위탁대상) 물품 등의 제조, 수리, 공사, 가공,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 (수탁기업) 그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원사업자) 원사업자가 ■ (위탁대상)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하고 ■ (수급사업자)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규모 제한	■ 위탁기업의 규모제한 없음 * 단,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조사(상생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중기업 이상일 것 요구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인 경우 : (매출액)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단, 일정 매출액 이하 중소기업 제외: 제조·수리위탁(20억원 미만), 건설위탁(30억원 미만), 용역위탁(10억원 미만)																					
예시	대기업 →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13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 소기업이 위탁기업일 경우 수위탁거래에는 해당되나 조사 및 제재대상에서 제외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2조원 초과 중견기업 → 8백억 ~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대금지급에 한해 하도급거래 인정(하도급법 §13)																					
원사업자와 위탁 대상의 관계	■ 위탁기업과 위탁대상의 관계가 30가지 가능 * 제조^①, 판매^②, 수리^③, 공사^④, 가공^⑤, 용역^⑥ (6) X 제조^①, 수리^②, 공사^③, 가공^④, 용역^⑤(기술개발 포함)(5) = 30가지 * (예시) 제조업자 → 제조위탁 (○) - 용역업자 → 제조위탁 (○) - 제조업자 → 공장건설위탁 (○)	■ 원사업자와 위탁대상의 관계가 7가지로 제한 <table border="1" data-bbox="906 1420 1452 1675"> <thead> <tr> <th>구분</th><th>원사업자</th><th>수급사업자</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제조위탁</td><td>제조</td><td>제조</td></tr> <tr> <td>판매</td><td>제조</td></tr> <tr> <td>수리</td><td>제조</td></tr> <tr> <td>건설</td><td>제조</td></tr> <tr> <td>수리위탁</td><td>수리</td><td>수리</td></tr> <tr> <td>건설위탁</td><td>건설</td><td>건설</td></tr> <tr> <td>용역위탁</td><td>용역</td><td>용역</td></tr> </tbody> </table> * (예시) 용역업자 → 제조위탁 (X) 제조업자 → 공장건설위탁 (X)	구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위탁	제조	제조	판매	제조	수리	제조	건설	제조	수리위탁	수리	수리	건설위탁	건설	건설	용역위탁	용역	용역
구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위탁	제조	제조																					
	판매	제조																					
	수리	제조																					
	건설	제조																					
수리위탁	수리	수리																					
건설위탁	건설	건설																					
용역위탁	용역	용역																					
제한 사항	■ 위탁기업의 업과는 무관한 물품 등의 제조, 수리, 공사, 가공, 용역을 위탁할 수 있음 * (예시) 자동차제조업자 → 엔진제작 위탁 (○) - 자동차제조업자 → 작업복제조 위탁 (○)	■ 원사업자의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수리, 건설, 용역수행 행위를 위탁할 것 * (예시) 자동차제조업자 → 엔진제작 위탁 (○) - 자동차제조업자 → 작업복제조 위탁 (X)																					